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 |
|----------|-------|
| 의안 번호 | 16188 |
|----------|-------|

제안연월일 : 2015. 7. .

제안자 :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의안명 | 발의자 | 발의일자 | 경과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강후의원 | 2014. 12. 30. | 제332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5. 4.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부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의원 | 2013. 8. 2. | 제332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5. 4.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부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군기의원 | 2013. 8. 9. | 제332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5. 4.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부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원욱의원 | 2013. 8. 20. | 제332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5. 4.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부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민희의원 | 2015. 6. 22. | 제329회(정기회) 2015. 4. 14. 「국회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직접 회부 |

제334회(임시회) 제1차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2015. 7. 1)는 위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334회(임시회) 제9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15. 7. 1.)는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에의 입당신청 및 탈당신고 시 본인확인방법을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정당의 입·탈당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당원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당의 효력은 당원증 발급여부와 관련이 없고, 수령하지 않는 당원증이 많아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음.

그러므로, 개정안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칠 수 있다면, 정당의 입·탈당을 허용하도록 하고, 당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당원증을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당에 입당 또는 탈당하고자 하는 경우 정당의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제3호 및 안 제25조제1항제3호).

나. 시·도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법률 제 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원증을”을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으로 한다.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3. 정당의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속 시·도당에 탈당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속 시·도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있다.

1.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3. 정당의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3조(입당) ① <u>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u></p> <p>②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p> | <p>제23조(입당) ① <u>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u> 2. <u>「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u> 3. <u>정당의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u> <p>② ----- ----- ----- ----- -----</p> |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③ · ④ (생략)

제25조(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소속 시·도당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시·도당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탈당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당원이 된 자의 요청
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속 시·도당에 탈당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속 시·도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있다.

1.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3. 정당의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 | |
|-------------------|----------------------------------------------------------------------|
| <p>② ~ ④ (생략)</p> | <p><u>등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